

전남도교육청 납품비리 백태 보니

죄의식 없이 계좌로 뇌물 받고 브로커·업자들과 버젓이 골프

경찰이 최근 적발한 전남도교육청의 '납품비리' 사건(광주일보 11월 6일 6면)은 교육 공무원들의 비리 실태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교육을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지역민들이 많은데다, 교육청 스스로 '청렴'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비리 행태를 접한 지역민들의 실망감도 클 수밖에 없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적발한 전남도교육청 공무원들의 비리 행태는 '청렴'을 모토로 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한두 명도 아니고 연루된 직원들만 57명으로, 이들이 브로커와 업자들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골프 접대를 받는가 하면, 각종 선물세트들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남지역 학교 62곳의 다목적 강당이나 체육관에 28억 원 상당의 롤스크린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 업체 관계자와 브로커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수사결과, 롤스크린 설치업체는 납품을 위해 브로커 10명에게 13억원을 건넸고 브로커들은 물품 납품 여부를 책임지는 담당 직원들로

청렴 외치더니 돈 챙기기 혈안 부패 교육 공무원 무더기 적발

비 등으로 1억원을 썼다.

공무원 8명이 브로커들에게 10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받았다. 수사기관 추적이 쉽게 가능한데도, 은행 계좌이체로 6명이 받았고 2명은 현금을 직접 받는 등 대담함을 보였다. 한 번만 받은 공무원보다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받은 공무원이 더 많았다.

납품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공무원들만 받은 게 아니다. 브로커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성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에게도 선물을 건네는 등 접촉의 '갭'을 이어갔는데 상당수 공무원들이 여기에 쉽게 넘어왔다는 게 경찰 조사 내용이다. 각종 선물과 현금을 쥐어주며 로비를 벌였고 선물도 단순한 과일·수산물 뿐 아니라 골프를 함께 치고 와이셔츠를 선물하는 등 공무원 개인별 취향과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브로커들에게 꼬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를 내야할 처지에 몰린 공무원들만 45명이나 된다. '설마'하는 생각으로 한 번에 100만원 이하나 한 해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뿌리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공정'의 교육을 가르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지나친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말도 나올만하다.

비리 등으로 정상적 물품 납품에 들어갈 비용이 브로커와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이었다. '부패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쉽게 계약을 따낼 수 있었던 롤스크린 설치업체 대표 등은 계약 조건과 다른, 낮은 사양의 롤스크린을 설치해 차익을 남겼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는 "3만원 이상의 밥을 먹지않는 등 내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등의 업무는 일부 공무원에게 독점성이 부여된 만큼 책임감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이와관련,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정부패를 근본색원하고 고강도 대책 방안을 마련해 전남도교육청의 청렴 도약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화재 대피 이렇게 9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안전한국유현 국가재난대응 상시훈련에서 구청직원들과 민원인들이 방화로 인한 청사 내 화재를 가정, 2층에서 경사강하식 구조대를 통해 대피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경찰 'TF팀 효과' ...보이스피싱 줄었네

5월 이후 발생 건수 줄고 검거 늘어
올 피해액 106억 넘어 방심은 금물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데 간간힘을 쓰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의 경우 13개 부서 모두가 참여하는 대규모 테스크포스(TF)가 꾸려진 뒤 범인 검거 현황도 부쩍 늘었다.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현장을 돌며 홍보하고 발로 뛰는 결과로 받아들여질만하다.

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모두 533건. 시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금액만 106억 9000만 원에 이른다. 경찰이 전담 부서를 만들기 전인 4월까지만 해도 245건이 터졌다.

광주경찰이 지난 4월 광주청 내 13개 부서가 모

두 참여하는 대규모 TF팀을 꾸리고 지난 9월부터는 형사와 강력팀까지 투입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도 부쩍 늘어난 보이스피싱 때문이었다.

일단 수치상으로는 경찰 투입 효과가 나타난다.

TF가 구성되기 전(1~4월) 월 평균 63.5건 발생하던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5월 이후 월 평균 46.5건으로 줄었다.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도 늘어났다. 1~4월 간 발생건수 대비 검거인원은 1.26명(245건 발생·322명 검거) 수준에서 5~10월의 경우 2.06명(279건 발생·578명 검거)으로 0.8명 증가했다.

김교태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해 강력팀을 투입했다니 검거 소요 일수가 기존 5일에서 2.5일로 단축

됐다"고도 했다. 광주서부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절취책 검거에 강력팀을 투입했다니 검거율이 50%대에서 80% 수준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마냥 안심하긴 이르다. 당장, 지난 4일 오후 서구 양동 대로변에서 2억 40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피해도 발생했다.

올해 피해액(106억 9000만원)은 이미 지난해 전체 피해액(101억 5000만원)을 넘어선 상태. 연말까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주로 '수거', '인출' 담당자들만 검거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범죄 발생을 완전 차단하는 건 경찰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와 통신사의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 원천 차단, 범인의 엄한 처벌 등도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용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과 휴대전화 유심 모집책 등을 검거하는 등 넓은 범위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재 "약사·한약사 외 약국 개설 금지한 약사법은 합헌"

약사나 한약사만 약국을 열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재는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제기

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약사 A씨는 약사가 아닌 B씨가 개설한 약국에서 급여를 받고 의약품을 조제하는 일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금지

한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B씨와 함께 유죄를 선고받고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약사법 제20조 1항 등은 약사·한약사, 혹은 이들로 구성된 법인이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사무장병원'에 준 요양급여비 13억원 어찌나

"불법성 정도 고려 않고 전액 징수 위법" 판결...건보공단 환수 어려워져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원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 기판·조사 협조·운영성과 등을 따지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사무장병원'에 지급했던 13억8300만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 환수도 어렵게 됐다. 공단의 꼼꼼하고 치밀한 행정 처분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는 A의료생협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의료생협은 지난 2015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6월 광주시 서구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다가 의료법 위반(비의료인의 요양기관 개설) 혐의로 광주지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A생협은 검찰 수사결과, 조합 설립 인가 당시 조합원 명의를 도용하고 임원 전원이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되는 등 형식적으로 설립된 의료생협인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들이 대법원 위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A생협은 생협 이사인 특적인의 주도로

지난 2011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생협 이름과 병원이름을 바꾸며 운영해왔다.

공단은 검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이 기간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13억8300만원을 해당 생협과 이사장, 임원 등 6명에게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생협측은 병원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역할과 불법성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일률적으로 징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단 처분이 적법했다"며 생협측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운영 과정에서의 잘못이나 이익의 정도 등 잘못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단은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급여비용의 액수, 이사장과 임원 등 비의료인 개설자가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